

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40일
신청인	법인(단체)명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
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	
	사무실 주소		
	검정분야		
	업무개시일		

「기상관측표준화법」 제14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기상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. 「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」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「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」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기상측기의 검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. 기상측기의 검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보유 또는 공동활용 · 임차한 장비의 명세서 및 교정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) 4. 사업계획서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 3. 부동산등기부등본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